

##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. 28.

#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3가길 4 외 1건

연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	비 고
1	북가좌동 291-7	증가로23가길 4	2015. 1. 28.	건물 멸실로 건축물대장 말소 등에 따른 폐지	
2	북가좌동 291-8	증가로23가길 6	2015. 1. 28.	건물 멸실로 건축물대장 말소 등에 따른 폐지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지적과(☎330-107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에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합니다.